

의안번호	제 653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장선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3월 3일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장선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
발 의 자 : 장선배, 박형용, 이숙애,
이상욱, 이의영, 허창원
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지금까지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,
-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기존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대행하던 것을 ‘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에서 담당하도록,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의2 ~ 안 제3조의4)
- 나. 기금집행을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4조)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23호
- 다. 협의 : 여성가족정책관
- 라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)”를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.

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,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3조의3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의4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<u>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)</p> <p>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<u>심의위원회</u>")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<u>심의위원회</u>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<u>기금운용관</u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③ <u>심의위원회</u>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<u>심의위원회</u>에서 <u>대행한다</u>.</p>	<p>제3조(<u>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</u>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"위원회"</u>-----.</p> <p>② <u>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위원장</u>----- 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의2(<u>위원회 구성</u>) ① <u>위원회</u>는 <u>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u>.</p> <p>② <u>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</u>.</p> <p>③ <u>위원은 청소년 분야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,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</u>.</p>

	<p><u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의3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<u>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의4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① (생략)</p> <p><u>②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

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등록된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 도서 구입비 등을 충청북도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청소년기본법

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·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“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
-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심의, 선정
-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추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장학사업 등 추진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의2(위원회 구성)
- 안 제4조(기금관리·운용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 요인 :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장학사업 추진
- 추계의 전제
 - 2021년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 적용
 - 기존 추진 중인 사업(청소년 장학금) 적용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 계 (천 원)	산출기초	비고
위원회수당	2,100	7명×100천원×3회	위촉직만 해당
청소년 장학금	20,000	40명×500천원	

